

KCGS Report

제13권 11호 | 통권 제167호
2023.11.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3권 11호

발행일 : 2023년 11월 30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3권 11호 | 2023. 11.

● ESG 동향

국내 상장기업의 협력업체 ESG 평가 및 관리 사례 분석	2
국내 상장회사 이사회와 다양성과 전문성 현황(1) - 이사회 전체의 성별, 연령 다양성을 중심으로 -	11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이슈와 국내외 동향	22

● Global News

1. ISSB 기반 글로벌 ESG 공시 동향, Part 1	37
2.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및 글로벌 재생에너지 연맹(GRA),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발표	39

ESG 동향

국내 상장기업의 협력업체 ESG 평가 및 관리 사례 분석

김예린*

- ▶ EU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법안의 입법이 2024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ESG 실사 필요성이 강조됨
- ▶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대응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급망 ESG 실사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대기업임
- ▶ 상위 대기업 외 기업들도 공급망 ESG 실사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위 대기업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협력업체 또한 원청업체의 실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함

들어가며

-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법안 초안을 상정함
 -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관련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며, 집행위는 전체 가치사슬을 실사 범위로 제안함
 -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역내·역외 대기업과 고위험 산업(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임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ESG 데이터팀 연구원, yrkim@cgs.or.kr

1)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nnex, EU commission, 2022.2.23

〈표 1〉 집행위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적용 대상 기업

구분		기준(해당 조건 동시 충족 시 적용)
EU 기업	대기업	-근로자 수 500명 초과 -세계 연간 순매출 1억 5000만 유로 초과
	중견기업	-근로자 수 250명 초과 -세계 연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
제3국 기업	대기업	-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EU 내 순매출 1억 5000만 유로 초과
	중견기업	-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EU 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

출처: EU 집행위원회

-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에 집행위가 상정한 법안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EU 의회는 2023년 6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 EU 이사회와 의회 모두 공급망 실사 범위를 집행위가 제안한 전체 가치사슬이 아닌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EU 의회는 적용 대상 기업에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모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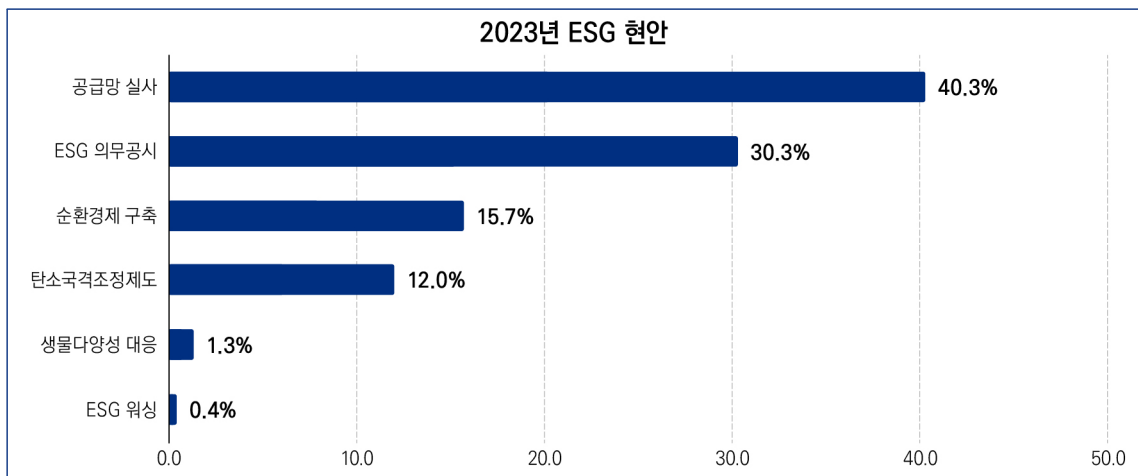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한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의 입장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3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EU는 2024년 6월 이전에 최종 합의안을 반영한 법안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임
 -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2024년에 발효되면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후인 2026년, 중견기업은 4년 후인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적용되는 국내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기업들이 EU 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실사를 위한 체계적이며 빠른 준비가 필요함
 -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업뿐 아니라, 적용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대비 또한 필요함
 - 본고에서는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국내 기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협력업체 ESG 평가 및 관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함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대응 현황

- 지난 2023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¹⁾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올해(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가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라고 응답함

〈그림 1〉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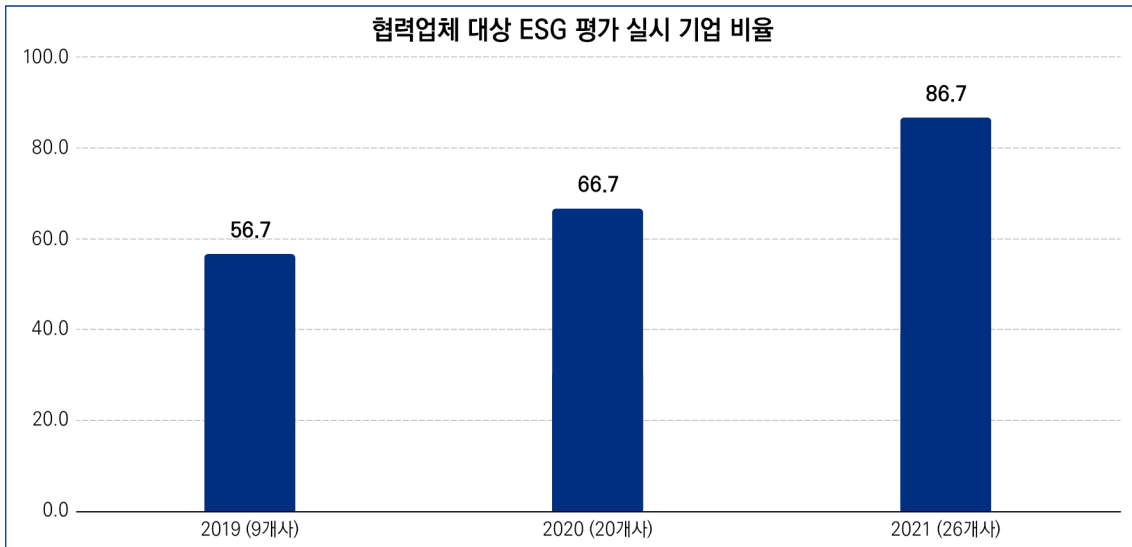
-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공급망 ESG 실사법이 올해(2023년) 독일에서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EU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ESG 실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사 결과 고객사와의 거래나 계약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ESG 실사 대응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함
 - 공급망 실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달리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원청기업 48.2%, 협력업체 47.0%가 ‘별다른 대응 조치 없다’라고 답변함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공급망 ESG 실사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1월에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및 ESG 평가 담당 부서 설문과 대기업 협력업체 108사 설문을 통해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²⁾을 조사하여 발표함

1)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3.02.06

2) 대기업의 ESG 협력사 관리현황, 중소기업중앙회, 2023.01.10

- 주요 대기업 30사 대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ESG 평가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9년 대비 2021년에 약 30%p(9사) 증가한 86.7%(26사)가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 10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0.5%가 거래 대기업의 ESG 경영 요구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거래감소 및 중지 등)을 받는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경우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ESG 평가 강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ESG 실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은 상위 대기업이 대다수임을 유추할 수 있음
- 공급망 ESG 실사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향후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상위 대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국내 기업의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 및 관리 사례

-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 및 관리를 우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25사를 선정하여 조사함
 - 아래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공급망 ESG 관리를 우수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함
 -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관련 행동규범 준수 조건을 명시함
 -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함
 - 협력업체의 ESG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조치(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를 실시함
 - 기업이 2022년 혹은 2023년에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를 조사했으며,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혹은 방법을 활용하는지 확인함
 - 선정한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활동 중 ①공급망 ESG 관리 거버넌스, ②협력업체 ESG 평가 프로세스, ③협력업체 대상 ESG 관련 지원 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함

1) 공급망 ESG 관리 거버넌스

- 공급망 ESG 관리 거버넌스 영역 분석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관리 및 감독 주체를 확인함
 - 조사 대상인 25사 중 12사가 ESG 위원회에 공급망 ESG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ESG 위원회에서 공급망 ESG 개선과제 수립과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등 ESG 위원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 ESG 위원회를 통해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12사 중 지주사인 1사는 모든 그룹사가 참여하는 ‘그룹 공급망 관리 협의회’를 통해 공급망의 환경, 탄소중립, 인권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공급망 ESG 관련 목표 수립과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등 협력업체 대상 ESG 관리를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됨
 - 12사 중 다른 1사는 대표이사가 ESG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등 공급망 ESG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 13사는 구매심의위원회, 내부심의위원회 등 공급망의 전반적인 요소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공급망 ESG 관련 사항을 공급망 기술, 공정거래, 법무 등의 안건과 함께 관리하고 있음
- 협력업체의 ESG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ESG 관련 안건을 공급망 관련 위원회가 아닌 ESG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ESG 위원회를 통해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하지만 조사 대상이 협력업체의 ESG를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ESG 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급망 ESG를 다루는 것이 국내 기업의 주된 분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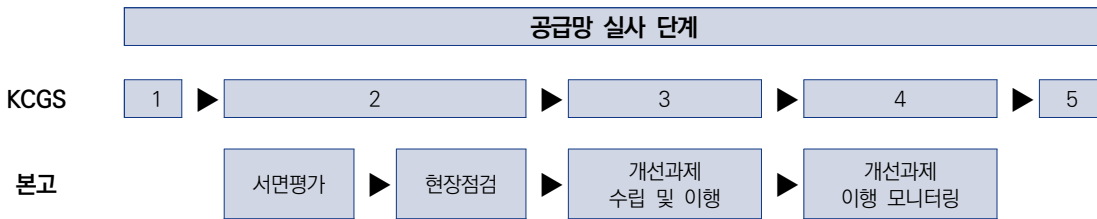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으로 인해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공급망 ESG 관리 거버넌스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2) 협력업체 ESG 평가 프로세스

- 협력업체 ESG 평가 프로세스 영역은 ①기업의 공급망 실사 단계와 ②공급망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 조치에 대해 분석함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의 모범기준³⁾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 실사 단계는 1) 기업 정책과 시스템 내 공급망 행동강령 및 안전보건정책 통합, 2)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3) 부정 영향 예방과 완화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4) 활동 이행사항 점검, 5)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단계로 구성됨
 - 본고에서는 다섯 개의 단계 중 2단계에서 4단계에 속하는 실사 프로세스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표 2〉 공급망 실사 단계



- 또한,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에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 부여 등 어떠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지 분석함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조사 대상인 25사 중 서면평가와 현장점검 모두를 통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파악한 기업은 21사이며, 서면평가만을 실시한 기업이 3사, 현장점검만을 실시한 기업이 1사임
-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을 모두 실시하는 기업은 대다수의 경우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ESG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각 기업마다 다르며,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예: 서면평가 결과 70점 미만 등)와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예:

3) ESG 모범기준, 한국ESG기준원, 2021

- 서면평가 결과 하위 30% 등)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2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급망 ESG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등 공급망 ESG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기업 22사 중 20사가 제3자인 외부기관을 통해 현장점검을 수행하며, 1사는 기업 내 독립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팀에서 별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⁴⁾
 - 협력업체 대상 공정한 ESG 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기업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선과제 수립 및 이행)** 25사 중 20사의 협력업체가 ESG 리스크 파악을 통해 개선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함. 이 중 협력업체 대상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을 모두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기업은 18사이며, 2사는 서면평가만을 통해 도출함
 - 20사 중 15사는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을 통해 ESG 리스크가 있는 협력업체를 파악하여 각 업체에 개선과제를 맞춤형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 5사는 협력업체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자체적으로 도출하여 원청업체인 기업의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를 통해 개선과제를 부여함
 - 개선과제를 수립한 후 협력업체의 과제 이행 단계로 진행하는 기업이 대다수이나, 과제 수립과 이행 단계 사이에 협력업체에게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기업들이 6사 있음이 확인됨
 - 협력업체가 ESG 개선과제를 직접 수립하거나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가 ESG 리스크 개선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해당 과정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개선과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개선과제 이행 모니터링)** 협력업체가 ESG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업 20사 중 19사가 이행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함
 - 개선과제 이행을 모니터링하지 않는 1사는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협력업체가 ESG 컨설팅을 통해 개선과제를 이행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여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됨
 - 기업의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협력업체의 개선과제 이행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과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실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사 대상인 25사 모두 협력업체의 ESG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4) 그 외 1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현장점검 주체 확인이 불가함

- 등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이 중 8사는 인센티브 부여 정책과 페널티 부여 정책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며 11사는 인센티브 정책만을, 6사는 페널티 정책만을 가지고 있음
- 우수 협력업체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①기업과의 거래 시 우대, ②협력업체 성장 지원, ③시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업과의 거래 시 우대 : 구매 물량 우선 배정, 협력업체 선정 단계에서 가점 부여 등
 - 협력업체 성장 지원 : 금융 지원(상생경영펀드, 교육비 지원, 대출 이자 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 시상 :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그에 따른 시상
 - 미흡한 협력업체 대상 페널티로는 협력업체 선정 시 감점 부여, 구매 물량 감소, 계약 해지 등 기업과의 거래 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주인 것으로 확인됨

3) 협력업체 대상 ESG 지원

- 조사 대상 25사 모두 협력업체의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위해 ESG 관련 지원을 하고 있음
- 기업의 ESG 지원 항목은 ‘협력업체 ESG 컨설팅’(20사), ‘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ESG 교육’(20사), ‘ESG 벤치마킹 지원’(4사) 순으로 확인됨⁵⁾
 - 협력업체 ESG 컨설팅 : 기업이 직접 혹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
 - 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교육 : 협력업체의 ESG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에 대한(온실가스 관리, 에너지경영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등) 교육을 제공
 - ESG 벤치마킹 지원 : 동종업체의 ESG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등 협력업체가 벤치마크할 수 있는 지표 안내
- 25사의 ESG 지원 항목 중 협력업체 대상 ESG 컨설팅과 교육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자금 지원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하지만 대기업 협력업체 108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⁶⁾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 항목과 협력업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 간에 괴리가 있음
 - 기업은 협력업체가 ESG 경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협력업체는 ESG 성과를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선호하는

5) 기업의 ESG 지원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집계함

6) 대기업의 ESG 협력사 관리현황, 중소기업중앙회, 2023.01.10

경향이 있어 이러한 괴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마치며

-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입법이 확실해졌으며, 해당 법안이 1년 내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안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관련 대비가 필요함
-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ESG 실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시가총액 및 매출액이 높은 상위 대기업인 것으로 보임
-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 및 관리를 우수하게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공통적으로 ①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관련 행동규범 준수 조건을 명시하며, ②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③협력업체의 ESG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수 대기업 25사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공급망 ESG 관리 거버넌스** : 25사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ESG 위원회를 통해 협력업체 ESG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ESG 위원회에서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것이 국내의 주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공급망 ESG 관리 거버넌스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협력업체 ESG 평가 프로세스** : 25사 모두 협력업체 대상 ESG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관리 조치를 실시함. 인센티브 유형은 기업과의 거래 시 우대, 협력업체 성장 지원, 시상 등으로 다양하지만 페널티 유형은 기업과의 거래 축소 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 **협력업체 대상 ESG 지원** : 25사 중 대부분의 기업이 ESG 컨설팅과 ESG 교육을 통해 협력업체 대상 ESG 지원을 하고 있음. 협력업체가 ESG 경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향후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거나 국내에도 공급망 ESG 실사 관련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위 대기업 외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ESG 실사를 시행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에 따라 협력업체 또한 ESG 경영 체계 구축 등 원청업체의 ESG 실사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내 상장회사 이사회들의 다양성과 전문성 현황(1)

- 이사회 전체의 성별, 연령 다양성을 중심으로 -

박준성*

- ▶ 최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3차 개정과 유럽연합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는 등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 본고에서는 국내기업의 이사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 다양성을 성별 및 연령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사회 전문성은 경력 및 역량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 ▶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 내 여성이사의 비율은 0% 이거나 10% 미만인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사회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이사회 연령 다양성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모두 50년대생, 60년대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현상을 보임
- ▶ 이처럼 남성 중심과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1. 서론

□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의 중요성 증가

-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르면 이사회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 경험, 능력, 성별의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최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3차 개정(2023.9.11.)¹⁾에서도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성별 다양성, 전문적 경험, 연령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사회 평가 시에 이사의 성별, 연령,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연구원, jspark@cgs.or.kr

1) 출처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2023.9.11.)

- 경영, 위험관리 등과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함께 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에서도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2022.11.23.)²⁾을 발표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여성(과소 대표되는 성별)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도록 규정하며, 사외이사의 성별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 현황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5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과거에 비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여전히 사내이사의 경우 특정 성별(남성)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다양성 측면이라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규제 준수라는 최소한의 의미에서 접근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이사회 중심 경영이 중요해지고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감시의 기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조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전문성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거수기’, ‘권력의 전리품’과 같이 사외이사를 부정적으로 비판할 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외이사의 적절한 견제 및 조언의 기능이 충실히 작동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이사회가 감시·견제·조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성별 다양성, 연령 다양성을 살펴보고, 특히 사외이사의 경력, 역량의 전문성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내용은 총 2차례에 걸쳐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 1차 발간에서는 분석 대상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이사회 성별 및 연령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후 발간될 2차에서는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이사회 전문성 및 특징**을 분석할 예정임

2) 출처 : 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related measures(2022.11.23.)

2. 본론

1) 분석 목적 및 방법

□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 현황 분석

○ 분석 목적

-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 전문성에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실제 기업 경영에 있어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 배경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 국내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다양성을 위해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연령 다양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방법

- 대상기업 : 2023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359개사*
 - * 총 공시기업 368개사 중 부동산 리츠(REITS) 7개사, 상장폐지기업 2개사 제외
- 자료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2022년 말 기준)
- 분석내용 : (이사회 다양성)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이사 수, 성별, 출생연도, 연령 (이사회 전문성) 사외이사의 경력, 역량
- 전문성 구분 기준

〈표 1〉 사외이사의 전문성 구분 기준

대분류	소분류	정의
경력	정부관료	정부 또는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
	검찰·법원	법원, 검찰의 고위공직자 출신
	정계(정치인)	국회의원, 정치단체 출신
	학계(교수)	대학 교수 출신
	변호사	검찰·법원 출신이 아닌 변호사
	회계사	공인회계사
	동종업계	소속된 회사와 동종업계 출신
	이종업계	소속된 회사와 이종업계 출신
역량	법률	법학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금융	금융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회계	회계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세무	세무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경영	경영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경제	경제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언론	언론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인문 기타	사회복지, 소비자, 광고, 행정 등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공학	공학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의학	의사, 의학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업계 전문성	특정 전공을 분류할 수 없지만, 업계 전문성을 인정할만한 근무기간 및 직위 경력 보유
	기타(확인불가)	전공 및 경력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2)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현황

- 이번 챕터에서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 이사회 전체,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남성 및 여성 구성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함

□ (분석결과 1) 이사회의 전체 이사 및 사외이사 구성 현황

〈표 2〉 이사회의 전체 이사 및 사외이사 구성 현황

(단위 : 명, 개사, %)

전체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전체 대비 사외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4명	4	0.58%	1명	27	1.92%	1%이상~10%미만	0	0.00%
5명	42	7.59%	2명	31	4.41%	10%이상~20%미만	8	2.23%
6명	62	13.45%	3명	89	18.98%	20%이상~30%미만	41	11.42%
7명	86	21.76%	4명	111	31.56%	30%이상~40%미만	34	9.47%
8명	53	15.33%	5명	42	14.93%	40%이상~50%미만	32	8.91%
9명	46	14.97%	6명	37	15.78%	50%이상~60%미만	140	39.00%
10명	30	10.85%	7명	10	4.98%	60%이상~70%미만	80	22.28%
11명	22	8.75%	8명	7	3.98%	70%이상	24	6.69%
12명	5	2.17%	9명	2	1.28%	-	-	-
13명	3	1.41%	10명	2	1.42%	-	-	-
14명	3	1.52%	11명	1	0.78%	-	-	-
15명	3	1.63%	-	-	-	-	-	-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 분석 대상기업 359개사의 이사회 전체 이사 및 사외이사 수와 그 비율을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인원수는 7명(21.76%), 사외이사 수는 4명(31.5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체 이사 수는 6명, 8명, 9명 순이었으며, 사외이사 수는 3명, 5명, 6명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이사 수 대비 사외이사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50%이상~60%미만'구간의 기업이 140개사(39.0%)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인 수치로는 '사외이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기업이 59개사, '사외이사 비율 57.14%'에 해당하는 기업이 55개사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2) 이사회 남성 및 여성이사 구성 현황

〈표 3〉 이사회 남성 및 여성이사 구성 현황

(단위 : 명, 개사, %)

남성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여성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전체 대비 여성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3명	2	0.24%	0명	150	41.78%	0%	150	41.78%
4명	22	3.59%	1명	159	44.29%	1%이상~10%미만	17	4.26%
5명	68	13.87%	2명	43	11.98%	10%이상~20%미만	138	54.37%
6명	88	21.53%	3명	3	0.84%	20%이상~30%미만	45	31.02%
7명	63	17.99%	4명	3	0.84%	30%이상~40%미만	6	5.88%
8명	49	15.99%	5명	1	0.28%	40% 이상	3	4.47%
9명	35	12.85%	-	-	-	-	-	-
10명	21	8.56%	-	-	-	-	-	-
11명	5	2.24%	-	-	-	-	-	-
12명	3	1.47%	-	-	-	-	-	-
13명	1	0.53%	-	-	-	-	-	-
14명	2	1.14%	-	-	-	-	-	-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 분석 대상기업 359개사의 이사회 남성 및 여성이사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사 수는 6명(21.53%), 여성이사 수는 1명(44.2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성이사 수는 5명, 7명, 8명 순이었으며, 여성이사 수는 0명, 2명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이사 대비 여성이사 비율을 살펴보면 '10%이상~20%미만'구간의 기업이 138개사(54.37%)로 가장 많았으나, 비율 구간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로는 '여성이사 비율 0%'가 150개사, '여성이사 비율 14.29%'가 46개사로 순으로 확인됨

□ (분석결과 3)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중 여성이사 구성 현황

〈표 4〉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중 여성이사 구성 현황

(단위 : 명, 개사, %)

1) 사내이사의 성별 구성 현황			사내이사 중 여성이사 비율		
여성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내이사 중 여성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명	321	89.42%	0%	321	89.42%
1명	34	9.47%	1%이상~20%미만	4	1.11%
2명	4	1.11%	20%이상~30%미만	21	5.85%
-	-	-	30%이상~40%미만	10	2.79%
-	-	-	40%이상~50%미만	0	0%
-	-	-	50% 이상	3	0.84%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2) 사외이사의 성별 구성 현황					
여성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여성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명	175	48.75%	0%	175	48.75%
1명	148	41.23%	1%이상~20%미만	29	8.08%
2명	30	8.36%	20%이상~30%미만	98	27.30%
3명	3	0.84%	30%이상~40%미만	32	8.91%
4명	3	0.84%	40%이상~50%미만	6	1.67%
-	-	-	50% 이상	19	5.29%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 분석 대상기업 359개사의 사내이사 여성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0명인 기업이 321개사로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내이사 중 여성 비율은 0%를 제외하고는 '20%이상~30%미만'구간의 기업이 21개사(5.85%)로 확인됨
- 반면 사외이사 여성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0명인 기업이 175개사로 전체의 약 48.75%정도 차지했으나, 이어서 1명인 기업이 149개사로 약 41.23%로 나타남.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의 경우 0%를 제외하고는 '20%이상~30%미만'구간의 기업이 98개사(27.30%)로 확인됨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여성 구성 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외이사의 경우 1명 이상 구성된 기업이 절반 이상(약 52%)인 것에 비해, 사내이사의 경우 0명이 약 90%에 육박하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간의 성별 다양성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이 30%미만인 기업이 약 84%로, 사내이사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사외이사의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이사회 의 연령 다양성 현황

- 이번 챕터에서는 이사회 의 연령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사회 전체, 남성, 여성,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각각 구분하여 출생연대와 평균연령을 분석함

□ (분석결과 4) 이사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

〈표 5〉 이사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

(단위 : 명, %)

이사회 전체			사내이사			사외이사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40년대	105	3.80%	40년대	46	3.39%	40년대	47	3.34%
50년대	724	26.18%	50년대	265	19.51%	50년대	484	34.40%
60년대	1,384	50.05%	60년대	749	55.15%	60년대	635	45.13%
70년대	479	17.32%	70년대	240	17.67%	70년대	214	15.21%
80년대 이후	73	2.64%	80년대 이후	58	4.27%	80년대 이후	27	1.92%
합계	2,765	100%	합계	1,358	100%	합계	1,407	100%

평균연령	60.7세	평균연령	59.7세	평균연령	61.7세
------	-------	------	-------	------	-------

- 분석 대상 전체 이사 2,765명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회 전체적으로는 60년대 출생인 이사가 1,384명으로 약 50%를 차지했으며, 사내이사는 55.15%, 사외이사는 45.13%가 60년대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50년대 출생인 경우가 484명으로 34.40%로 나타나, 사내이사 대비 출생연대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확인됨
- 평균연령의 경우 사외이사 61.7세, 이사회 전체 60.7세, 사내이사 59.7세 순으로 사외이사의 평균연령이 사내이사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5) 남성이사 및 여성이사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

〈표 6〉 남성이사 및 여성이사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

(단위 : 명, %)

이사회 전체			남성이사			여성이사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40년대	105	3.80%	40년대	98	4.00%	40년대	7	2.58%
50년대	724	26.18%	50년대	690	27.78%	50년대	30	11.07%
60년대	1,384	50.05%	60년대	1,265	50.47%	60년대	125	45.76%
70년대	479	17.32%	70년대	387	15.63%	70년대	90	32.84%
80년대 이후	73	2.64%	80년대 이후	52	2.12%	80년대 이후	21	7.75%
합계	2,765	100%	합계	2,492	100%	합계	273	100%

평균연령	60.7세	평균연령	61.1세	평균연령	56.3세
------	-------	------	-------	------	-------

- 분석 대상 전체이사 2,765명의 남성이사 및 여성이사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60년대 출생인 이사가 1,265명으로 약 50%를 차지했으며, 여성이사는 125명(45.76%)이 60년대 출생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사는 50년대가 690명으로 27.8%를 차지하나, 여성이사는 70년대가 90명으로 32.8%로 나타나 남성이사와 여성이사 간의 출생연대 차이가 있음
- 평균연령의 경우 남성이사 61.1세, 이사회 전체 60.7세, 여성이사 56.3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사와 여성이사의 나이차는 4.6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분석결과 6) 사내/사외이사 및 남성/여성이사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

〈표 7〉 사내/사외이사 및 남성/여성이사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

(단위 : 명, %)

1) 사내이사					
남성이사			여성이사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40년대	52	3.95%	40년대	6	14.29%
50년대	234	17.78%	50년대	6	14.29%
60년대	739	56.16%	60년대	10	23.81%
70년대	251	19.07%	70년대	14	33.33%
80년대 이후	40	3.04%	80년대 이후	6	14.29%
합계	1,316	100%	합계	42	100%

평균연령	59.8세	평균연령	57.4세
------	-------	------	-------

2) 사외이사					
남성이사			여성이사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출생 연대	해당 인원 수	비율
40년대	46	3.91%	40년대	1	0.43%
50년대	456	38.78%	50년대	25	10.82%
60년대	526	44.73%	60년대	113	48.92%
70년대	136	11.56%	70년대	77	33.33%
80년대 이후	12	1.02%	80년대 이후	15	6.49%
합계	1,176	100%	합계	231	100%
평균연령		62.8세	평균연령		56.0세

- 분석 대상 전체이사 2,765명의 출생연대 및 평균연령 현황을 사내이사/사외이사, 남성이사/여성이사로 각각 살펴보면, 우선 사내이사의 출생연대는 남성이사가 60년대 739명(59.16%), 70년대 251명(19.07%) 순이었으며, 여성이사는 70년대 14명(33.33%), 60년대 10명(23.81%) 순이었음
 - 평균연령은 남성이사가 59.8세, 여성이사는 57.4세로 남성이사가 여성이사보다 2.4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외이사의 출생연대는 남성이사가 60년대 526명(44.73%), 50년대 456명(38.78%) 순이었으며, 여성이사는 60년대 113명(48.92%), 70년대 77명(33.33%)순으로 두 성별간의 출생연대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
 - 평균연령은 남성이사가 62.8세, 여성이사는 56.0세로 남성이사가 여성이사보다 6.8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사내이사의 성별차이인 2.4세보다 약 2.7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남성이사가 여성이사보다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외이사의 성별간 연령 차이가 사내이사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사외이사의 이사선임 시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가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결론

- **(이사회 성별 다양성)** 분석 대상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과 성별 다양성은 상법³⁾, 자본시장법⁴⁾ 등 정부 규제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간의 성별 불균형은 여전히 심한 것으로 확인됨
 - <분석결과 1>과 같이 전체 이사회 대비 사외이사 비율은 '50%이상~60%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듯이, 상법의 상장회사 4분의 1 이상 및 2조원 이상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 규제 등 최소한의 법 준수 수준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추측됨
 - <분석결과 2>에서는 이사회의 남성이사 수는 6명, 여성이사 수는 1명이 가장 높은 빈도였으며, 전체대비 여성이사 비율은 '10%이상~20%미만' 구간의 비중이 54.37%, '0%'구간의 비중 41.78%인 점은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분석결과 3>에서는 사내이사 중 여성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은 10.58%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외이사 중 여성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은 50%를 상회하고 있어, 국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간의 여성이사의 선임 불균형을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이사회 연령 다양성)** 분석 대상기업의 이사회 연령은 60년대생이 가장 많았으며, 사내이사가 사외이사보다 비교적 젊은 것으로, 여성이사가 남성이사보다 비교적 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외이사인 남성이사는 다른 분류 중에서도 평균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인류통계학적 특징 뿐만아니라 사외이사의 역할에 따른 선임배경 등에 기인할 것이라 추론됨
 - <분석결과 4>에서 이사회 전체 이사들의 출생연대는 60년대가 50.0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50년대생이 34.40%로 60년대생(45.13%) 다음으로 많아, 사외이사의 연령대가 비교적 고령화 된 것을 알 수 있음. 실제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사내이사는 59.7세인 반면 사외이사는 61.7세로 나타나, 사외이사의 선임 시점이 통상 기업 또는 정부 공직자의 퇴직 이후인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됨
 - <분석결과 5>에서는 남성이사 및 여성이사 모두 60년대생이 가장 많으나, 남성이사의 경우 50년대생이 27.78%, 여성이사의 경우 70년대생이 32.84%로 여성이사가 비교적 젊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이사는 61.1세인 반면 여성이사는 56.3세로 나타나, 과거 세대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점 등에 기인하여 여성이사의 평균연령이 비교적

3) 상법 제542조의9제1항(사외이사의 선임) :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 구성에 관한 특례)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젊게 나타난 것이라 추측됨

- <분석결과 6>에서는 사내이사-사외이사, 남성이사-여성이사 구분 없이 60년대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사외이사인 남성이사의 경우 50년대생이 38.78%로 다른 분류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류에서는 70년대생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실제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사외이사인 남성이사가 62.8세, 사내이사인 남성이사가 59.8세, 사내이사인 여성이사가 57.4세, 사외이사인 여성이사가 56.0세 순으로 확인되며, 사외이사의 성별간 나이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현상은 사내이사의 경우 정년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년대생 이전이 근속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사외이사의 경우 과거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으므로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 배경에 있어 업계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영, 법률, 행정 자문 등을 위해 연륜 있는 교수 또는 정부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경력을 가진 이사의 경우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파악됨

ESG 동향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이슈와 국내외 동향

박동빈, 임자영*

- ▶ 국내에서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입되었으며, 국내 법령 및 실무적 이슈로 인해 위탁관리리츠가 비교적 활성화됨
- ▶ 그러나 위탁관리리츠의 구조적 특성상 리츠의 주주와 외부 자산관리회사(AMC)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해외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가 심화되어 AMC와의 자산관리계약 해지 및 자기관리리츠로의 전환 등의 주주제안이 제기되기도 함
- ▶ 최근 국내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는 등 국내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특성 및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 이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슈를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서론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일컫음¹⁾

〈표 1〉 리츠의 주요 특성

항목	내용
다수의 투자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제2항)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에 투자·운영(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제1항)
투자자에게 배당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주식회사	주식회사만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매니저), dbpark@cgs.or.kr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매니저), jyylim@cgs.or.kr
1)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²⁾되어 현재까지 약 40여 개 국가에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년)하며 최초로 도입되었음
- 한편, 리츠의 종류에는 1)위탁관리리츠, 2)기업구조조정리츠, 3)자기관리리츠가 있으며, 회사의 형태(명목회사/실체회사 여부) 및 투자대상 부동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상근인력이 없는 명목회사인 반면, 자기관리리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근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실체회사임
 - 기업구조조정리츠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을, 위탁관리리츠 및 자기관리리츠는 일반부동산 및 개발사업에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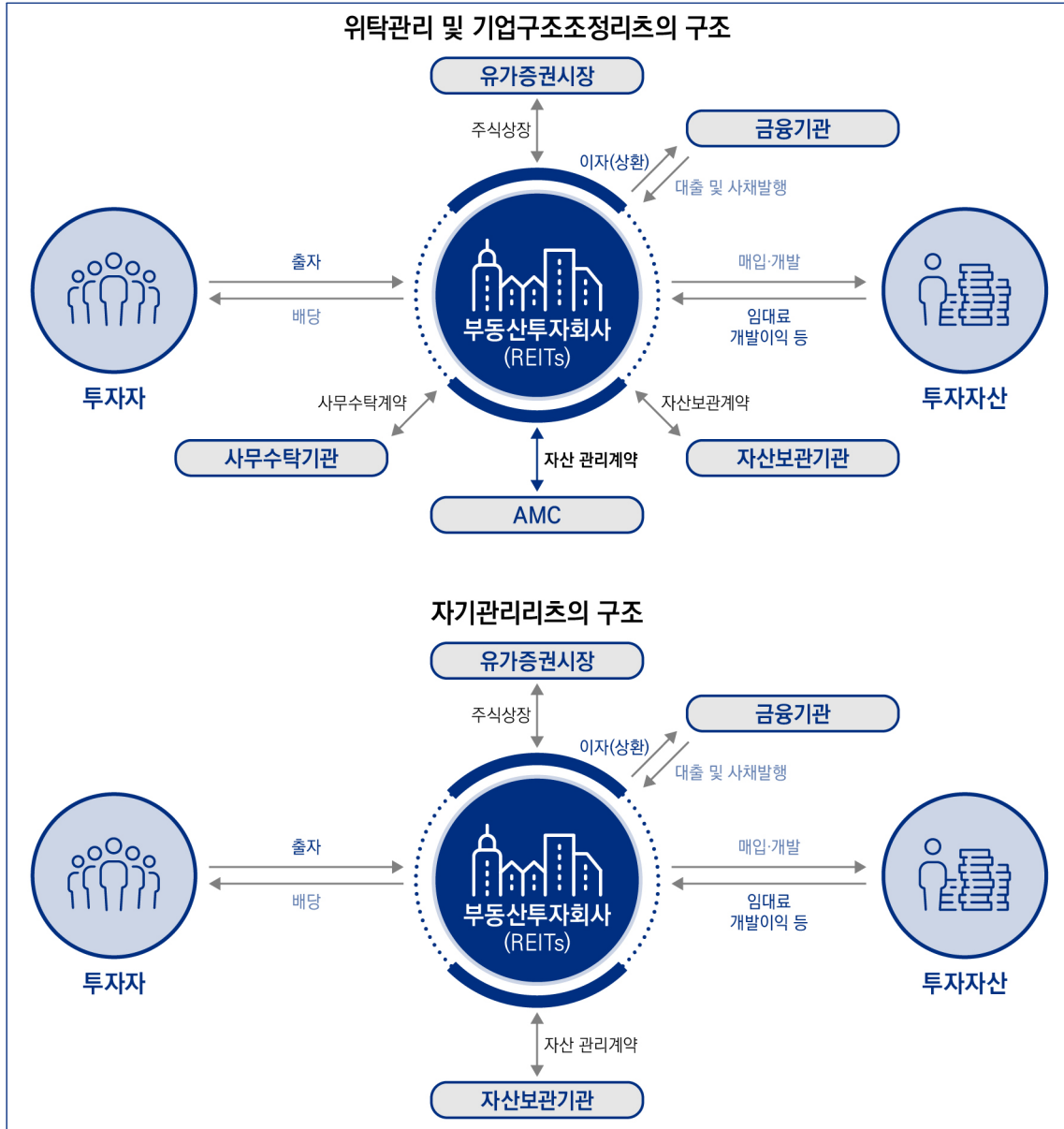
〈표 2〉 리츠의 종류별 비교

종류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자기관리리츠
투자대상	일반부동산/개발사업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일반부동산/개발사업
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 리츠, 개발 비중 30% 이하 시 등록 같음 가능	국토교통부영업인가 또는 등록(금융위 사전협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 리츠, 개발 비중 30% 이하 시 등록 같음 가능
감독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회사형	명목회사(상근인력 없음)		실체회사(상근인력 보유)
주식분산	1인당 50% 이내	제한 없음	1인당 50% 이내
주식공모	주식 총수의 30% 이상	의무사항 아님(사모 가능)	주식 총수의 30% 이상
상장	요건 충족 후 즉시	의무사항 아님	요건 충족 후 즉시
자산구성	부동산 70%, 증권 및 현금 포함 80% 이상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금출자 가능)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 운용		5인(상근직 고용)
배당	90% 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 가능)		
자금차입	자기자본의 2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10배)		
회사존속	선택적	(일반적으로) 한시적	영속

출처 : 한국리츠협회(<https://www.kareit.or.kr/>)

2)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2001년)을 시작으로 싱가포르(2002년), 말레이시아(2006년) 등으로 확산됨

〈그림 1〉 리츠의 종류별 구조



출처 : 한국리츠협회(<https://www.kareit.or.kr/>)

-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리츠 형태는 **위탁관리리츠**로 전체 리츠(357개) 중 약 95%에 해당함³⁾
- 상술한 바와 같이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외부의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에 위탁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를 띠

3) 2023년 9월 30일 기준

- 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선진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04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함
- 국내에서 위탁관리리츠 비중이 높은 이유는 AMC를 통한 위탁관리 형태가 운용 자산규모가 작은 리츠 설립 초기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체회사로 분류돼 법인세가 부과되는 자기관리리츠와 달리 명목 회사인 위탁관리리츠는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자기관리리츠가 최초로 상장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자기관리리츠 종목이 코스피 최단 기간 상장폐지를 기록하거나, 주요주주가 주가 조작혐의로 구속되는 등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⁴⁾
- 다만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AMC에 위탁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이슈**가 있으며, 리츠 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이해상충 이슈가 과거 크게 대두되어 현재는 자기관리리츠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⁵⁾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함
 - 이에 더하여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해외 투자자들의 주주제안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국내 상장 리츠 소유구조 및 AMC 현황

- 2023년 9월 30일 기준 국내 상장 리츠의 수는 총 23개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위탁관리리츠가 19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기관리리츠는 3개사, 기업구조조정리츠는 1개사가 존재함
 - 기업구조조정리츠 1사(이리츠코크렙)의 경우 위탁관리리츠로 전환 예정이므로, 국내 상장 리츠는 대다수의 위탁관리리츠와 일부의 자기관리리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부 위탁관리리츠는 최대주주가 AMC의 계열회사이기도 함

4) '상장폐지' 다산리츠 경영진, 자금 횡령으로 실형, 한국경제, 2012.02.21.
자기관리리츠 18개사 중 한 곳도 수익 못내, 매일경제, 2011.07.03. 외

5) Internal vs. external management structures, Ernst&Young LLP(2017)

〈표 3〉 국내 상장 리츠 현황(2023.09.30. 기준, 가나다 순)*

번호	종목	종류	최대주주 (지분율)	AMC
1	ESR켄달스퀘어리츠	위탁관리	CPP인베스트먼트(24.85%)	켄달스퀘어리츠운용
2	KB스타리츠	위탁관리	한국씨티은행(16.6%)	KB자산운용
3	NH올원리츠	위탁관리	이지스자산운용(8.05%)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4	NH프라임리츠	위탁관리	이지스자산운용*7.1%)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5	SK리츠	위탁관리	SK(주)(42.99%)	에스케이리츠운용
6	디앤디플랫폼리츠	위탁관리	(주)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15.53%)	디앤디인베스트먼트
7	롯데리츠	위탁관리	롯데쇼핑(50%)	롯데에이엠씨(주)
8	마스터프리미어리츠	위탁관리	(주)성담(7.52%)	마스터투자운용(주)
9	모두투어리츠	자기관리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이(42.36%)	-
10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위탁관리	국민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7.51%)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1	미래에셋맵스리츠	위탁관리	국민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15.81%)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2	삼성FN리츠	위탁관리	삼성생명보험(주)외(41.19%)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13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위탁관리	(주)서부티엔디(50%)	신한리츠운용(주)
14	신한알파리츠	위탁관리	한화손해보험(6.82%)	신한리츠운용(주)
15	에이리츠	자기관리	(주)한발컨설팅 외(40.77%)	-
16	이리츠코크렙	기업구조조정* *	이랜드리테일 외(45.03%)	(주)코람코자산신탁
17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위탁관리	(주)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15.81%)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18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위탁관리	(주)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13.7%)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19	제이알글로벌리츠	위탁관리	지브이에이자산운용(6.49%)	제이알투자운용(주)
20	케이탑리츠	자기관리	이명식 외(10.69%)	-
21	코람코더원리츠	위탁관리	주식회사 신한은행(폐블스톤 전문투자형 리츠부동산모투자 신탁제1-1호)(19.8%)	(주)코람코자산신탁
22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위탁관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신한은행) (14.79%)	(주)코람코자산신탁
23	한화리츠	위탁관리	한화생명보험(주) 외(49.45%)	한화자산운용

* 리츠 최대주주 지분율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정기보고서 기준

** 위탁관리리츠 전환 예정

출처 : DART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문제

-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부동산자산에 대한 매입·매각·운용 결정을 AMC에 위탁함에 따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리츠의 주주는 배당금 수익이나 주가 상승을 추구하는 반면, AMC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통해 보상받기 때문에, 많은 경우 리츠의 주주와 AMC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대리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은 크게 ① 보상체계 측면에서의 이해상충과 ②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히 스폰서를 보유한 리츠에서는 스폰서와 일반 주주와의 관계에서의 대리인 문제까지 추가되어 이해상충 이슈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스폰서란 리츠 자체 혹은 AMC의 지분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리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를 의미하며, 아시아 리츠의 스폰서는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AMC를 소유·통제하는 모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임⁶⁾
- 스폰서는 자산을 리츠에 공급함으로써 유동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통제하는 리츠의 AMC가 매입·매각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받는 성과 보수까지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음
- 이처럼 스폰서의 자산을 리츠에 매각하는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가 매입·매각 당사자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AMC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대리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

(1) 보상체계 측면에서의 이해상충

- **(성과 보수의 형태 및 비중)** AMC에 보상으로 지급되는 위탁관리 수수료의 산정 지표 설정 형태에 따라 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음
- 리츠가 AMC에 지급하는 위탁관리 수수료의 형태는 기본적인 운용 수수료에 더하여 성과 연동형 보수로 구성될 수 있으며,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매입 매각 금액’, ‘매각 차익’, ‘자산규모’ ‘주가’, ‘배당가능이익 초과달성 여부’, ‘배당액’ 등이 주로 활용됨
 - ‘매입 및 매각 금액’ 이나 ‘매각 차익’, ‘자산규모’ 등 이 성과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 AMC가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리츠의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리츠가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매각해 성과 보수를 수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6) 한광호 & 노승환. (2021). 스폰서 소유권이 리츠의 시장 위험과 유동성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분석, 7(1), 47-68.

- 반면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주가’가 성과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외부 시장요인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 가치와 비례하지 않은 형태로 주가가 급등함으로써 성과와 무관하게 단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성과 측정 지표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보상의 수준) 이에 더하여 스폰서가 있는 리츠의 경우, 스폰서가 소유한 AMC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실제 관련 해외 연구에 따르면 일반 AMC보다 스폰서가 소유한 AMC와 더 높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확인됨⁷⁾

(2)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 (자본 조달) 스폰서 등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서 스폰서의 자산 매입을 위해 리츠가 과도하게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자본을 조달할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로 위탁관리방식의 리츠에서 더 높은 부채비율이 확인되며, 이는 금융 리스크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됨⁸⁾
- (부당 거래)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스폰서의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의 부당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됨
 - 아시아 리츠 시장에 대한 연구 결과,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였을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됨⁹⁾

해외 위탁관리리츠 관련 동향

- 리츠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리츠를 뮤추얼펀드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위탁관리형만 허용했으나 위탁관리리츠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대리인 문제 및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음¹⁰⁾

7) Lecomte, P., & Ooi, J. T. (2013).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externally managed Singapore REITs.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46, 664-684.
 8) Capozza, D. R., & Seguin, P. J. (2000). Debt, agency, and management contracts in REITs: the external advisor puzzle.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20, 91-116.
 9) Tang, C. K., & Mori, M. (2017). Sponsor ownership in asian REITs.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55, 265-287.
 10) Sagalyn, L. B. (1996). Special Edition: Institutional Options: Publicly Traded REITs and Privately Held Real Estate., Wei, P., Hsieh, C. H., & Sirmans, C. F. (1995). Captive financing arrangements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 case of REITs. Real Estate Economics, 23(3), 385-394., Ambrose, B., & Linneman, P. (2001). REI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21(3), 141-162. 외

- 위탁관리리츠의 대리인 문제가 심화되자 1986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을 통하여 자기관리리츠에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0년부터는 자기관리리츠가 크게 확산되어 현재 자기관리리츠가 리츠의 대부분을 차지함¹¹⁾
- **홍콩**에서는 지난 2003년 리츠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년 후인 2005년 6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Code o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하 ‘리츠코드’)'를 제정함(2022.08. 개정)
 - 홍콩 리츠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리츠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가 신청 시 리츠코드의 각 조문별 준수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 리츠코드의 대원칙 6번에서는 리츠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AMC가 수탁자책임을 준수하여 AMC의 주주가 아닌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한 리츠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
 - 또한, 리츠가 체결하는 모든 거래는 독립기업 간 거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거래는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주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
 - 공시 측면에서는 사업보고서에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사안 및 해당 사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함
 - **(이해상충 관련 정책 사례)** Champion REIT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AMC Champion REIT와 AMC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요소를 정의하고 각각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공개하고 있음¹²⁾
 - 주요 내용으로는 1) AMC는 Champion REIT 외의 리츠에 대해 자산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없고, 2)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는 홍콩 리츠코드를 따르며, 3) AMC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사회 과반을 AMC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해야 하고, AMC 사외이사들은 Champion REIT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으며 AMC의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Champion REIT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해 AMC는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주식(unit)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확인됨

11) Internal vs.external management structures, Ernst&Young LLP(2017)

12) Champion REIT 2022 Annual Report

-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2000년 11월 증권투자신탁법(Japan's Securities Investment Trust Law) 개정을 통해 리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탁관리리츠 형태만 허용하고 있음
- 일본 리츠(J-REIT)는 투자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법인제도를 기반으로 설립되며, 그밖에 도쿄증권거래소(TSE) 상장기준, 법인세법, 조세특별조치법 등의 법률 및 기준에 의해 규제됨
- J-REIT는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TSE에 투자회사, AMC 및 스폰서 간 자본/인사/경영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에 대한 정책,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진행 상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¹³⁾
- **(이해상충 관련 정책 사례)** ESCON REIT는 이해관계자와의 매입 거래시 제3자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거래 시 제3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거래 정책', 자산 매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등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림 5〉 ESCON JAPAN REIT 이해관계자 거래 정책

Measures Against Conflict of Interest	
ES-CON ASSET MANAGEMENT (hereinafter, "Asset Manager") takes measure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through the formulation of selfimposed rules and multi-tiered checks i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1} .	
Interested-Party Transaction Rules (self-imposed rules)	
Acquisition/Dispos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quisition price ≤ Appraisal value by third party • Disposition price ≥ Appraisal value by third party
Bridge or warehousing ^{*2} reque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irm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negotiation process and scheme at the time of LOI presentation • Offer price at the time of LOI presentation and acquisition price ≤ Appraisal value by third party
^{*1} Interested parties are those defined in the Asset Manager's Interested-Party Transaction Rules.	
^{*2} Those in which a third parties other than the interested parties are the subject are called "bridges" and those in which the interested parties are the subject are called "warehousing".	

출처: ESCON JAPAN REIT 홈페이지(<https://www.escon-reit.jp/en/features/governance.html>)

- **싱가포르**에서는 증권선물법(Cap. 289) 제321조에 따라 제정된 AMC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음¹⁴⁾

13) J-REIT Guide Book, TSE, 2023.09.

14) GUIDELINES TO ALL HOLDERS OF A CAPITAL MARKETS SERVICES LICENCE FO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MANAGEMENT, 2021

- 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AMC의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AMC의 CEO와 상임이사가 법인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나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 동시에 재직해서는 안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함
- 이에 더하여 보수체계에 관한 공시뿐만 아니라, 특히 보수가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보수체계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주주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함
 - AMC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수에 관한 결정 방침 및 절차를 공시해야 하고, 이러한 보수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기타 비금전적 보수로 구성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함
 - 또한, 이사 및 집행 임원의 보수가 (i)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ii) 해당 리츠 이외의 기업의 성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에, 해당 형태의 보수가 이사 및 집행 임원 연간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공시를 위한 지침을 함께 제시함
- 또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특별히 지배주주에게 위탁할 수 있는 모든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관계자와 수행하는 거래의 빈도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이해상충 관리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내 위탁관리리츠 시장의 이해상충 관련 규제 현황

- 국내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8월 16일 관련 법 개정¹⁵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 준수 범위가 확대됨
-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동법 제22조의3 제1항 제3조)
- **(주식취득 제한)** 이에 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자산관리회사가 30% 한도 이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¹⁵⁾ 이내에서 취득하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함(동법 제22조의4)

15) 본 고 작성일 기준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음

- (거래 제한) 또한 해당 (1)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주요주주(1/100이상), (3)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동법 제30조 제1항)
- 이 중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과 ‘거래 제한’ 중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와의 거래 금지에 관한 내용(3), (4)이 23년 8월 16일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등(〈표 4〉 참조)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됨

〈표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이해상충 관련 조항

조항 원문	비고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주식 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023/8/16 신설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호, 제4호 2023/8/16 신설

- 이러한 국내 법령의 제도적 요구사항 중 AMC 인가 시 요구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동법 제22조의2 제1항 제3조)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그러나 법에서 인정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로서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요구 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기능이 충분히 작동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위탁관리리츠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해소를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와 국내의 규제 동향은 다소 대조적임을 알 수 있음
- 비록 국내 리츠가 공시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일반적인 이해상충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상기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해상충의 범위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내 위탁관리리츠의 외부주주 입장에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적절히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음

해외 시장 위탁관리리츠 이해상충 관련 주주관여 사례

- 지난 2017년, 홍콩 기반 사모펀드인 PAG는 당시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던 Spring REIT에 대해, **현 AMC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안건 및 자기관리리츠로의 전환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음¹⁶⁾
- 기존에 중국 프리미엄 오피스 부동산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던 Spring REIT가 2017년에 영국 근교 자동차 수리점 체인을 9,300만 달러에 매입하였는데, 해당 체인은 Spring REIT의 AMC인 Spring Asset Management와 특수관계¹⁷⁾에 놓여있던 것으로 나타남
- 이에 PAG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음 네 개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하고자 함: 1) 현 AMC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2) 위탁관리리츠에서 자기관리리츠로 전환, 3) PAG Real Estate의 이사 Broderick Storie를 사외이사로 선임, 4) Spring REIT의 경영전략, 성과 및 지배구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독립적인 전문가 지정
- 그러나 Spring REIT에서는 주주총회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1)과 2)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투표를 권고하였으며, 현 AMC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출 채무 불이행이 초래될 수 있으며 현 AMC를 대체할 내부 자산관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
- 더하여 Spring REIT는 3)과 4) 주주제안은 상정을 거부하는 한편,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1) 및 2) 주주제안이 가결될 경우에 한해 다음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현 AMC의 자산관리성과에 만족하므로 주주제안에는 반대투표를 행사하겠다는 서면 의견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함¹⁸⁾

16) PAG DEMANDS LEGAL ACTION AS REIT GOES ROGUE, MINGTIANDI, 2017.11.01.

17) Spring Asset Management의 모회사인 Mercuria의 주요주주인 일본 종합 상사 기업 Itochu가 2011년에 해당 자동차 수리점 체인인 Kwik-Fit 지분 100%를 인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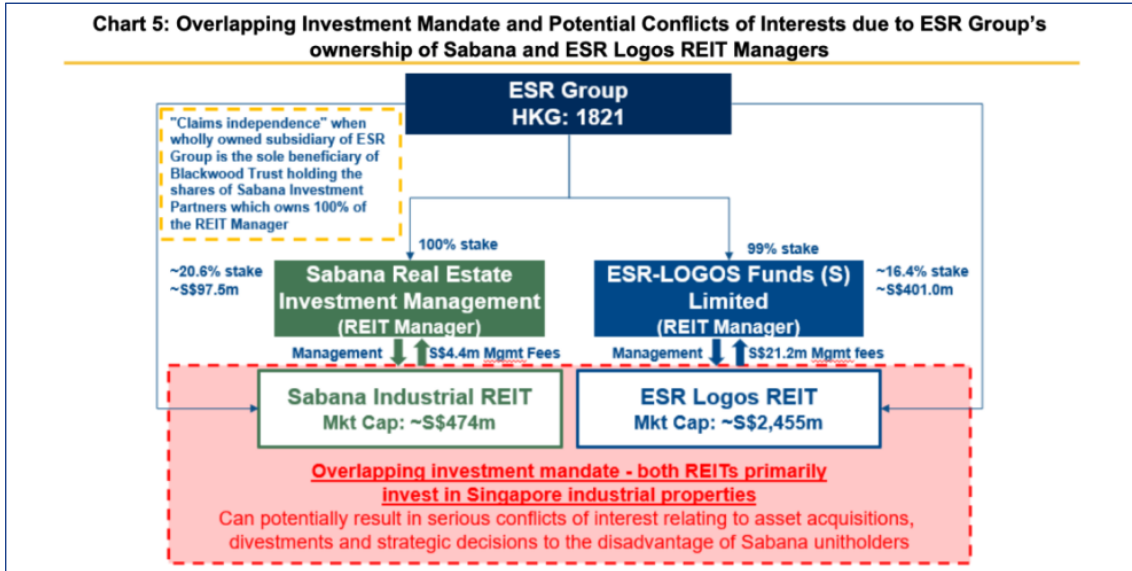
18) Circular to Unitholders in Relation to(1) Removal of the Manager; (2) Internalisation of REIT Manager and (3) Notice of EGM and Closure of Register of Unitholders, Spring REIT 웹사이트(<http://www.springreit.com/>), 2017.10.25.

- 이에 PAG는 Spring REIT의 지분 중 34% 이상을 AMC인 Spring Asset Management 및 그 모회사(Mercuria)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현 AMC에 만족'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회사의 반대투표 권고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정확한 내용을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공시한 데에 대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및 홍콩증권거래소(SEHK)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함
 - 다만 PAG의 해당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Spring REIT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현 AMC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주주제안 안건이 찬성 19.3%에 그쳐 부결됨
- 한편, 지난 6월 싱가포르의 행동주의 펀드 Quarz Capital ASIA(이하 "Quarz")는 Sabana REIT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 AMC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자기관리리츠 전환 등의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함**¹⁹⁾
- Quarz는 부동산시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Sabana REIT가 동종업계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 그로 인해 낮은 수준의 배당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Sabana REIT AMC의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함
 - Quarz에서 Sabana REIT 이사회와 AMC에 보낸 공개 서신에 따르면, Sabana REIT가 보유한 부동산자산 중 임대료가 높은 일부 주요 건물의 임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익 또한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MC는 계속해서 부동산자산 추가 편입 의사를 밝히는 등 **주당 배당금 상승 및 주가 개선보다는 자체 운용보수와 취득수수료 인상에 치중함**²⁰⁾
 - 또한, Quarz는 Sabana REIT의 경우, 스폰서를 보유한 위탁관리리츠가 통상적으로 직면하는 이해상충 이슈뿐만 아니라 스폰서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또 다른 AMC로 인해 **소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상충 요소가 있음을 지적함**
 - Sabana REIT의 AMC(Sabana REIT Management)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ESR Group은 또 다른 싱가포르 리츠 ESR Logos REIT의 AMC(ESR-LOGOS Funds)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데, ESR-LOGOS Funds의 규모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Sabana REIT Management의 4-5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Sabana REIT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음

19) A Fresh start for Sabana REIT – Replace the current REIT Manager with a newly set up internal manager., Quarz Capital 홈페이지(<https://www.quarzcapital.com/>), 2023.6.8.

20) OPEN LETTER TO THE MANAGEMENT AND BOARD OF SABANA REIT, Quarz Capital, SAVE SABANA REIT(<https://www.savesabanareit.com/open-letters>), 2023.02.21.

〈그림 1〉 Sabana REIT AMC 및 ESR Logos REIT AMC 소유구조



출처: Quarz Capital(<https://www.quarzcapital.com/>)

- Quarz는 Sabana REIT가 현 AMC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기관리리츠로 전환하는 경우 1) 자산관리업무 내재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그로 인한 배당금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 ESR-LOGOS Funds와의 이해상충이 해소되며, 3) 자산규모 확대, 자산 매입 및 매각 등의 성과에 연동된 기존 위탁자산관리수수료가 모두 없어지고, 내부 자산관리인력의 목표가 배당금 증가 및 순자산가치(NAV) 확대에 설정되는 등 일반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점을 주요 기대 효과로 제시함
- 그 결과 지난 8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Quarz의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5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되었으며, Quarz는 Sabana REIT에 2024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기관리리츠 전환 프로세스를 완료할 것을 요구함²¹⁾²²⁾

결론 및 시사점

-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외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자와 주주 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한계를 가짐
- 특히 보상체계, AMC와 리츠의 소유구조, 스폰서 유무 등에 따라 이해상충의 정도와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21) Extraordinary/ Special General Meeting::Voluntary, Sabana Industrial REIT, SGX, 2023.08.31.

22) Sabana Reit unitholders form committee to oversee manager's removal and internalisation, Gutzy Asia, 2023.09.11.

- 해외에서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거나 일반주주보다 스폰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하고, 현 AMC와의 자산관리계약 해지 및 자기관리리츠 전환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사례가 관찰됨
 - 특히 최근 싱가포르 상장 리츠인 Sabana REIT의 사례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상정한 현 AMC와의 자산관리계약 해지 및 자기관리리츠 전환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이 가결되어 귀추가 주목됨

- 국내의 경우 상장 리츠의 대부분(95%)이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위탁관리리츠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등에서 기인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해외에서는 위탁관리리츠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해소를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다소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 반면,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관련 규제가 보완된다면 국내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국내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리츠에 대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투자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보상체계가 자산규모 등의 지표에 연동되거나 높은 매입·매각 수수료로 구성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형태로 설정된 경우 대리인 문제가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또한, 스폰서 리츠의 경우 스폰서와 일반 주주 간 대리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 수수료 체계나 거래 조건 등의 결정 과정에서 스폰서에 유리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지, 내부적으로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Global News

1. ISSB 기반 글로벌 ESG 공시 동향, Part I

정선아*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표준 최종안 발표 이후 각국 정부는 공시 표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에 PART I에서는 싱가포르와 브라질의 공시 동향, PART II에서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공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함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회계 및 기업 규제당국(ACRA)과 싱가포르 거래소(SGX)는 ISSB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권고안을 발표함¹⁾
 - 본 권고안은 싱가포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로드맵 2030'의 일환²⁾으로 싱가포르 지속가능성보고자문위원회(SRAC)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24년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동 권고안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모든 상장기업³⁾은 2025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보고해야 하며, 매출 1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은 2027년부터, 매출 1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은 2030년부터 의무적으로 ISSB 기준을 사용해 공시해야 함
 -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공시에 대한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Scope 3 공시 의무는 한시적으로 유예됨
 - 싱가포르의 상장기업들은 공시를 시작한 후 2027년에는 Scope 1과 2의 배출량 공시에 대한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2029년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표 1〉 싱가포르 ESG 공시 권고안 실행 타임라인⁴⁾

(단위 : 회계연도 기준)

구분	기후 관련 공시	Scope 3 배출량 공시	Scope 1 & Scope 2 배출량 공시 외부 인증
모든 상장기업	2025	2026	2027
매출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	2027	2029	2029
매출 1억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 비상장기업	적용여부 검토는 2027년에 실시될 예정이며, FY 2030년경 결정 예정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sac@cgs.or.kr

1) ESG today, "Singapore Proposes Mandatory Climate Reporting for both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https://www.esgtoday.com/singapore-proposes-mandatory-climate-reporting-for-both-public-and-private-companies/> [2023.11.09.]

2) 2021년 발표된 '그린플랜2030(Green Plan 2030)'은 'UN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 및 '파리 협정'에 따른 약속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됨

3) ESG 공시 대상 상장 기업에는 해외법인, 기업신탁, 부동산 신탁회사도 포함됨

4) SRAC, 「Turning Climate Ambition into Action in Singapore, consultation paper」, 2023.07

- 현재 싱가포르의 금융, 농업, 식품, 임산물 및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상장 기업만 TCFD 권고안에 부합한 기후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외 모든 상장기업은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TCFD 공시 권고안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브라질

- 브라질 재무부(CVM)는 ISSB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브라질 규제에 편입하여, 2024년부터 자발적 공시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ESG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함⁵⁾
 - 브라질 당국의 ISSB 도입 결정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 자본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브라질 자본 시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브라질 지속가능성 선언위원회(CBPS)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자율 공시기간 동안 기업들이 ESG 공시에 대한 제3자 검증(assurance) 프로세스까지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현재 브라질은 ESG 규제법안 및 공시 기준은 부재하지만, 연방법 및 특별법 등에서 환경,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을 규율하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브라질 지속가능개발위원회(CVDS)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⁶⁾
 - 2021년, 브라질 연방정부 지역개발부는 'Estrategia Investimento Verde'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향후 지역개발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들은 국제 ESG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사회환경적 책임(RSA)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5) IFRS, "Brazil adopts ISSB global baseline, as IFRS Foundation Trustees meet in Latin America",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3/10/brazil-adopts-issb-global-baseline/> [2023.11.09]

6)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 "브라질 ESG 동향",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243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4271 [2023.11.20.]

Global News

2.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및 글로벌 재생에너지 연맹(GRA),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발표

박진하*

-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파리 협정 목표에 대한 각국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제1차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가 도출될 예정임¹⁾. 현재, 1.5°C 제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경로를 이탈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보다 본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²⁾

- 지난 10월 30일, COP28 개최에 앞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글로벌 재생에너지 연맹(GRA)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³⁾. 동 보고서 내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급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필요함을 주장함
 - 1.5°C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은 3배로, 에너지 효율성은 2배로 증가시켜야 함**.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2030년까지 11,174GW⁴⁾에 도달하여야 하며, 에너지 효율은 특히 최종 소비 부문(end-use sectors)⁵⁾ 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적용해야 함을 제시함.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요소가 동 보고서의 주요 골자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인프라와 시스템 운영) 변동성 재생에너지(VRE)⁶⁾가 주요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국가는 증가하는 수요량에 대비하여 전력망을 확장 및 업그레이드해야 함. 이때, 장기 목표와 부합하는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확장하여야 하며, 다양한 부문(예. 운송, 산업, 건설)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력 수요 피크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수요 관리 시스템(Demand-side management) 구축을 우선시할 것을 제안함
 - (2. 정책과 규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통합 시스템 및 그리드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함. 규제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비효율적인 장비를 교체하여야 함을 강조함. 또한, 재생에너지 점유율 상승을 위한 전력 시장을 설계하여야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jhpark@cgs.or.kr

1) Why the Global Stocktake is Important for Climate Action this Decad., UNFCCC, URL: <https://unfccc.int/topics/global-stocktake/about-the-global-stocktake/why-the-global-stocktake-is-important-for-climate-action-this-decade>

2) 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2023: 1.5°C Pathway, IRENA, URL: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3/Jun/World-Energy-Transitions-Outlook-2023>

3) Tripling Renewable Power and Doubling Energy Efficiency by 2030: Crucial Steps towards 1.5°C, IRENA, URL: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3/Oct/Tripling-renewable-power-and-doubling-energy-efficiency-by-2030>

4) 2022년 재생에너지 용량은 3,382GW임

5) 에너지 상품이 아닌 제품의 생산 또는 활동을 위해 에너지 상품이 연료 또는 비에너지의 목적으로 최종소비되는 부문임, e-나라지표

6) 변동성 재생에너지(Variabe Renewable Energy, VRE)는 자연조건 변화에 따라 발전량 및 출력 변동성이 큰 에너지를 의미하며, 주로 태양광과 풍력이 있음

- 하며,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정책과 규제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 (3.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및 역량 강화) 주요 자재의 공급 불안정성 완화, 가격 변동성 해소 등 재생에너지 조달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수립 및 참여 장려,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순환성 투자 확대,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범국가적 협력 체계 구축을 권고함. 또한, 고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숙련된 에너지 전환 인력을 구성하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제고할 것을 권장함
 - (4. 공공과 민간 금융 확대) 공공, 민간 기관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족 국가의 금융 격차를 해결하는 금융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권고함. 특히, 선진국(Global North)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을 개발도상국(Global South) 전역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국제 기후 금융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함
 - (5. 국제 협력 강화) 정부, 금융기관, 재생에너지 개발자 및 공급 주체, 시민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모두 아우르는 공공-민간 플랫폼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지역별 그리드 계획 및 그의 상호 연결, 국가 간 전력 거래 등 글로벌 차원의 재생에너지 그리드 확산을 위해 인근 정부와 당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권장함
- 파리 협정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 시스템 내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의 단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공급 측면에서는 1.5°C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확장하여야 하며, 이는 화석연료 발전의 단계적 감소, 물리적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장, 그리드 유연성 향상을 통해 실현 가능함
 -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장 핵심임. 더불어 기술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 및 개인들의 인식 개선과 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언급함. 단,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산업, 금융기관 및 에너지 최종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음